

붙임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계획 알림 및 신청 (정정)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18번지 일원
- 주택명칭 :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지상 26층, 총 4개동 아파트 406세대 중 일반공급 193세대 및 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 범위 내」
- 모집공고 승인일(예정) : 2022. 06. 17(금)
- 분양홍보관 오픈일(예정) : 2022. 06. 17(금)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377-5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 특별공급 신청일자(예정) : 2022. 06. 27(월) 09:00 ~ 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를 통한 인터넷 접수
- 문의전화 :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분양홍보관 T.1533-7484

---- 아 래 ----

○ 공급대상

주택 구분	타입	주택공급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소계		
민영 주택	74A	74.8950	27.8339	102.7289	64	6	6	13	2	6	33	31	3
	74B	74.9179	27.2105	102.1284	20	2	2	4	1	2	11	9	1
	74C	74.7872	28.2545	103.0417	14	1	1	2	-	1	5	9	1
	84A	84.7474	25.5490	110.2964	191	19	19	38	6	19	101	90	8
	84B	84.9789	25.6259	110.6048	69	7	7	14	2	7	37	32	3
	84C	84.9460	26.8986	111.8446	48	5	5	10	1	5	26	22	2
	합계				406	40	40	81	12	40	213	193	18

※ 세대별 공급면적은 준공 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정세대, 일정, 신청자격 등 관련 사항은 사업 인·허가상 변경 될 수 있음에 따라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국가유공자), 3호(국가보훈대상자), 8호에 의거 제35조제1항6호(정기복무제대군인), 7호(군인복지기본법), 17호(장애인), 23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 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자격요건 :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세대수 : 전용 85㎡이하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천기관

구분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 이상 복무 군인	국가유공자
기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나. 공급일정, 청약신청방법 및 장소, 당첨자발표일, 지정계약기간(예정)

구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2년 06월 27일(월)	2022년 07월 05일(화)	2022년 07월 18일(월) ~ 07월 20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견본주택

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수요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총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모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지너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지너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연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연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라.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에 관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 동호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지너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태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태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태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물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물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물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일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된 본인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별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마. 특별공급 구비서류(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접수 장소에 비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현 거주지, 거주기간,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인감도장' 제출 생략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비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영부로 접수 함.

양평 공흥3 휴먼빌 아틀리에

붙임2.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추천양식

「장애인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특별공급세대 배정내역 (총 1세대)

구분		74A	74B	74C	84A	84B	84C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	3	2	1	8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4	1	1	7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4	1	1	7	
	중소기업 근로자	1	-	-	3	1	1	6	
	장애인	경기도	1	1	1	3	1	1	8
		서울특별시	1	-	-	1	1	-	3
		인천광역시	-	-	-	1	-	-	1
		합계	2	1	1	5	2	1	12

※ 주택평형은 세대별 공급면적(㎡) × 0.3025로 산출 함 ※배정세대는 인·허가상 변경 될 수 있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양식 예시 및 유의사항

■ 대상자 : 총 _____ 명 (확정 : 00 명, 예비 : 00 명) _ 추천양식은 아래 예시 참조

기관추천 특별공급 종류	추천기관명	주택형	순번	추천구분 (확정,예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비고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종류 및 확정대상자(당첨자)와 예비대상자를 필히 구분하여 표시

◎ 작성순서 : 특별공급 종류 → 주택형 → 생년월일 → 확정자 모두 작성 후 예비자 작성

※ 각 타입별 확정 및 예비인원을 선정하여 회신

※ 예비대상자는 타입별 공급대상의 300%를 선정 (소수점 반올림)